

(報 告)

당면 현안사항 보고(안)

□ 자매결연 체결 추진결과

대상 : 성남시의회 ↔ 여수시의회

1. 자매결연 조인식

- 일 시 : 2000. 2. 10 (목) 16:00
- 장 소 : 여수시의회 소회의실
- 참 석 자 - 52명
 - 성남시의회 18명
 - 여수시의회 26명
 - 여수시 기관단체장 8명 (여수시장외 7명)

2. 자매결연 체결 합의내용

여수시의회와 성남시의회는 향후 호혜 평등의 원칙에 따라 경제·문화·예술·체육·행정·기타 분야에서 상호 교류와 협력을 추진한다. 특히, 다음 사항들의 실천에 노력한다.

1. 지역간 고유문화 및 선진시설 시찰등 각종 교류활동을 활성화 한다.
2. 의정활동의 상호 정보교환을 한다.
3. 공동 세미나 개최등 의원친목과 의회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4. 2010년 세계박람회 여수유치와 2005년 Design총회 성남유치를 위하여 공동 노력한다.

3. 양시 의회의장의 합의내용

- 2000년도 의정연수대회를 양시 의회 공동으로 개최한다.
- 성남시 농·수산물 유통사업소에 여수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을 위탁판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2000년도 상반기중에 여수시의회 의원을 성남시로 초대한다.
- 여수시의 각종 축제에 성남시의회 의원을 초청한다.
- 양 도시의 발전에 서로 노력하고 의정활동의 다양한 정보를 서로 교환한다.

□ 2000년도 의원 해외연수 계획

1. 연수일정 및 대상국

(제 1 진)

- 기 간 : 2000. 4. 24 ~ 5. 8 (14박15일)
- 연 수 국 : 서유럽(독일, 스위스, 이태리,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 인 원 : 12명 (의원9, 사무국3)

(제 2 진)

- 기 간 : 2000. 4. 26 ~ 5. 10 (14박15일)
- 연 수 국 : 북·동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거리, 오스트리아, 체코)
- 인 원 : 15명 (의원12, 사무국3)

(제 3 진)

- 기 간 : 2000. 8. 21 ~ 9. 4 (14박15일)
- 연 수 국 : 북·동유럽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오스트리아, 체코)
- 인 원 : 20명 (의원17, 사무국3)

2. 연수방법 : 위탁업체선정 추진

- 위탁업체 :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
- 대표자 : 임경호

3. 해외연수대상자 오리엔테이션

- 일 시 : 2000. 4. 17 (월) 14:00
- 장 소 : 의원 휴게실
- 대 상 : 27명 (제1진, 제2진 대상자)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건의안 발의결과 보고

- 제8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된,
- 지방자치법시행령 중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정례회의 (매년 6월·7월중)에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 4년마다 실시하는 지방의회 의원선거와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 중반에 하반기 원(상임위원회)을 재구성하는 시점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경우 부실감사가 우려되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개정건의안을 발의한 결과 보고 임

□ 개정건의안 발의

- 건의기관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 일 시 : 2000. 3. 30(목) 11:00(제34차 월례회의시)
(경기도 화성군 정남면 소재 실버타운 라비돌)
- 발 의 자 : 성남시의회 의장 염동준
- 발의내용 :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시기 변경
 - 현 행 : 매년 제1차 정례회시(6월·7월)
 - 개정안 : 매년 제2차 정례회시(11월·12월)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정건의안 의결(채택)

□ 향후 추진계획

- 전국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 제출
 -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서 개정건의안을 전국 시·군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하기로 함.

붙 임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 건의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건의문

21세기 국가와 민족의 장래를 위하여 국정 현안처리 및 정책개발과 지방자치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수고하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올 드립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경기도 시·군의회의 장 협의회는 지방자치를 조기에 정착시켜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국가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미흡하나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주역으로서 명실상부한 의회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주민의 여망에 부응하는 21세기 새로운 자치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21세기 무한경쟁 시대에 지방의 경쟁력은 곧 국가의 경쟁력으로서 지방자치를 통해서 경제성장과 국가발전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 아니할수 없

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의 확실한 기초를 다지고 기본이념인 주민의 의사와 욕구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지난 99. 7.31과 99.12.31 각각 공포되어 제1차 정례회 기간인 매년6월·7월(총선거가 있는 연도는 7월·8월)중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함에 따라 많은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있어서 6월·7월은 4년마다 지방의회 의원선거가 실시되고, 상임위원회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중반인 2년 후에는 하반기원을 재구성 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의 핵심활동인 행정사무감사의 부실이 우려될뿐 아니라,

매년 행정사무감사 대상 사업도 마무리 상태가 아닌 계속사업이거나 마무리된 사업도 전년도 사업으로 6개월 이후에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등 행정사무 감사 기능 더 나아가 지방의회 기능이 크게 약화 될것으로 우려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기도 시.군의회의회장 협의회 일동은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구현과 활발한 참여 정치의 제도화로 국가발전 및 주민복지의 실현을 위한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 기간중(11월·12월)에 실시 할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4 규정을 빠른시일내에 개정해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2000년 3월 30일

경기도 시.군의회의회장협의회 일동